

2025년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시업 공고

수원도시재단은 수원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간판교체지원, 점포 내부인테리어, 제품 포장패키지 제작을 위한 **"2025년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** 시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> 2025년 2월 13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

I 사업개요

- □ 사 업 명: 2025년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
- □ 지원대상: 공고일 현재 수원시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
 - ※ 사업자등록일 기준 2024. 8. 31. 이전 창업 소상공인

- < 소상공인 기준>

- (매출액 기준)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[별표2]기준에 해당할 것
- (종사자 수 기준)
 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 - ※ 융자제외 대상 업종[별표1]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
- ※ 직전 3년(2022년~2024년) 경기도와 시·군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(신청 불가, 지원 제외·취소)
- □ 공고기간: 2025. 2. 13.(목)~3. 11.(화)
- □ 신청기간: 2025. 3. 5.(수)~3. 11.(화) 18:00까지 [7일간]
- □ 지원분야: 간판교체지원, 점포 내부인테리어, 제품 포장패키지 제작 중 택 1



- □ 지원금액: 신청분야에 따라 최대 200만원~300만원까지 지원
- □ 신청방법:
 - (온라인) 수원시장허브(swsijanghub.kr)에서 공고 확인 후, 경기바로 (ggbar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
 - (방 문)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, 상권활성화센터로 방문 접수 가능
 - 접수시간은 9:00~18:00(12:00~13:00 제외)이며, 제출서류 준비하여 방문
 - 접수처 : 수원도시재단 상권활성화센터(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2층)
- □ 선정공고: 2025. 3. 20.(목) 16:00 (예정)

Ⅱ 추진일정

- □ 사업설명회
 - 일시: 2025. 2. 20.(목) 15:00
 - 방법: 비대면(유튜브 도시재단TV)
 - 주요내용: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
- □ 회계실무 및 역량강화 교육
 - 일시
 - (1차) 2025. 3. 27.(목) 오전 9:30
 - (2차) 2025. 3. 27.(목) 오후 3:00
 - * 지원대상 선정 후, 1차 또는 2차 일정을 선택하여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, 불참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(온라인 신청시 체크 필수)
 - 장소: 수원도시재단 더함사랑방(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1층)
 - 주요내용: 사업 정산 방법 안내, 역량강화 교육



4. 1.(화)~9. 30.(화)

10월 중

□ 지워일정(총괄) 구 분 내용 일 정 사업공고 ○ 지원사업 공고 [27일간] 2. 13.(목)~3. 11.(화) ○ 온라인 설명회 진행 사업 설명회 2. 20.(목) 15:00 * 유튜브 도시재단 TV ○ 서류 접수 [7일간] * 수원시장허브(swsijanghub.kr)에서 공고 3. 5.(수)~3. 11.(화) 확인 후, 경기바로(ggbar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 ※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접수 및 심사 ○ 서류심사 3. 12.(수)~3. 14.(금) 3. 20.(목) 16:00 ○ 선정 공고 최종선정 ※ 수원시장허브 게시 (예정) ○ 회계실무 및 역량강화교육 3. 27.(목) ※ 오전 또는 오후 중 1회 선택하여 필수 선정 소상공인 대상 (1차) 09:30 참석 교육 운영 * 교육 수료 전에 사전 시행한 (2차) 15:00 시공(제작)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○ 시공·제작을 완료한 선정 소상공인은 용역(시공) 추진 용역(시공)업체에게 (소상공인→ 3. 27.(목)~9. 30.(화) 총 집행비용을 선지급 후 재단에 용역(시공)업체) 지원금 신청 ○ 운영 지원(모니터링) 사업(운영) 지원 ※ 필요시 도시재단 소상공인 컨설팅 3. 27.(목)~9. 30.(화) (도시재단→소상공인) 지원사업 연계 ○ 사업완료 보고 및 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금 신청서 제출 4. 1.(화)~9. 30.(화) (소상공인→도시재단) * 정산서류 제출

지원금 지급

결과 보고

(도시재단→소상공인)

○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

지원사업 결과보고

○ 지원금 지급



Ⅲ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○ 간판, 점포 내부인테리어, 제품 포장패키지 제작 중 1개 선택

신청분야	세부 지원내용	단위별 한도액
간판교체지원	• 옥외 신규 간판 교체 지원 ※ 단순 수리(등갈이 등) 지원 불가	최대 300만원 이내 (공급가액의 90%)
점포 내부인테리어	 점포 내부 인테리어(도배, 장판, 가벽, 출입문, 샷시, 목공, 닥트, 바닥, 천정, 필름교체, 내부화장실 개선, 노후전기 배전판 교체 등) * 점포 외부 인테리어 불가 *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	최대 300만원 이내 (공급기액의 90%)
제품 포장패키지 제작	• 제품 포장용기, 제품 포장박스 제작 등 ※ 반드시 업체명, 브랜드명이 표기되어야 함	최대 200만원 이내 (공급가액의 90%)

- ※ 1개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, 공급가 90% 지원, 부가세 및 초과금은 자부담
- ※ 용역(시공)업체는 수원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며, 업체당 시공(제작)참여는 최대 5회
 - 1. 고객 서비스 개선, 매출 개선, 비용 절감 등 경영개선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신청해야 함
- 2. 신청분야는 선정 후 변경이 불가함
- 3.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,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
 - 지원불가: PC, TV, 냉장고, 에어컨, 가스레인지, 로고라이트, 디지털 사이니지, 소파, 미용의자, 가구류, 테이블, 판매장, 진열대, 판매대 등
- 4. 신청자가 선정 통지받기 전에 사전 시행한 점포개선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
 - 신청자가 선정 통지받은 후 점포환경개선 작업을 시행한 경우만 지원 가능

□ 선정 제외(신청 제한)

- 사업지원 제외업종(별표1 참조)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체
- ○최근 3년 내(2022~2024년) 경기도·시군 등에서 동일,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, 1인 중복 신청자(대표 동일 다른 사업자인 경우도 제외)
-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
- 금융거래 불가능자 및 국세·지방세 체납자



- 사치 향락업종(골프장, 무도장, 유흥주점)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(투기, 저해 업종 등)
-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(수입금액)이 "0"원 이하인 사업자
- 사업자 무등록자, 휴·폐업, 무점포 사업자
- 전기전자제품, 기계제품 및 가구 집기류,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

Ⅳ 제출서류 안내

- □ 사업 신청 및 제출서식 다운로드 안내
 - 공 고 확 인 : 수원시장허브(swsijanghub.kr), 방문 접수시 서류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 제출
 - 온라인 접수처 : 경기바로(ggbaro.kr)



□ 제출서류 목록(사업 신청시 준비하여 제출)

	서식번호	비고		
	1	체크리스트	제1호	
	2	신청서 ※ 지원 불가 품목 신청 시 심사 제외	제2호	
	3	추진계획서(점포사진 첨부 필수)	제3호	
	4	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	제4호	
	5	청렴이행서약서	제5호	
	6	시공(제작)계획서	제6호	
	7	견적서(비교견적서 제출 필수)	제7호	
	8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※ 업체명으로 발급(대표자명으로 발급 아님)	_	
	9	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	
		※ 무등록 시업자, 휴폐업자, 창업 6개월 미만자, 비영리시업자 신청 불가 매출액 증빙서류(택 1)		
		유형 제출서류 발급처	공공	
필수	10	과세 2023~2024년(최근 2년 전체) 세무서, 사업자 보이 보이 홈택스,	마이데이터 간편신청 동의 시	
		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발급	제출 생략 가능	
		※ 매출액 0원 이하, 매출액 확인 불가, 미신고, 미비, 미제출 시 최하점수 적용 법인사업자 필수 추가서류		
	11	유형 제출서류 발급처 종업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 종업원 수 확인서류 필수 제출(소상공인 사업체 범위 확인용_미제출 시 선정 불가)	-	
	12	하자보증이행각서 ※ 간판교체, 점포 내부 인테리어 신청시 해당 서류 제출	제10호	
해당 시	13	옥외광고업 등록증 ※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증명서 (간판 제작(시공) 등 해당시) ※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비대상 확인서	제11호	
	14	전기공사업 등록증 <u>(전기 공사 시)</u>	-	
우대 사항	15	_		



V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

- □ 선정기준: 정량평가, 가산점을 합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○ 동점자 처리: 정량평가 고득점 사업자, 사업기간 순으로 결정
 - ※ 예비선정: 선정취소 등으로 추가 지원 가능 시 예비 번호순으로 지원

구 분	심사항목					배점		
정량 평가	전년도 연매출현황 (40점) 전년도 매출액 감소율 (40점)	구간 배점 구간 배점 - (미비 구간 배점 구간 배점 * 부가 * 부가	2.6천면원 미만 40 1억원 미만 30 , 미제출시 -40% 이하 40 -15% 이하 30 세 증명 미제	3.2천면원 미만 38 1.2억원 미만 28 최하 점수) -35% 이하 38 -10% 이하 28 출시 매출부 당명원 1년 미	4.8천만원 미만 36 1.5억원 미만 26 -30% 이하 36 -5% 이하 26 만, 매출감소 만시 월 단우	6천만원 미만 34 2억원 미만 24 -25% 이하 34 -0% 이하 24 추이 부문 최 환산 금액을	최하 점수) 8천면원 마만 32 2억원 이상 22 -20% 이하 32 -0% 초과 22 너하검수 적용을 적용 시 최하 점수	100점
	사업업력현황 (20점)	구간 배점 구간 배점	12년이상 20 7년이상 15	등록 개업일 11년이상 19 6년이상 14 본 미비, 미제	10년이상 18 5년이상 13	9년이상 17 4년이상 12 제외 또는 초	8년이상 16 3년이상 11 나하점수 적용	
가산 점 (최대 10점)	구분 1 2 3 4	사	내용 가점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2점 수원페이 10+10 이벤트 참여 점포 2점 사회적배려자(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) 2점 수원도시재단 주관 소상공인 교육 수료자 5점				10점	
총 계						110점		



□ 선정취소

-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
-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
- 사전변경승인 없이 용역(시공)업체 변경 및 사업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
- 지정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2025. 3. 11.(화) 견적서 제출기한 ※ 접수마감일 기준
 - 2025. 9. 30.(화)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기한
- 허위·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
- 사업 수행기간 중 부도, 폐업, 휴업, 사업장 양도, 지방세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관련 법률 위반, 사업부실 등 수원도시재단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□ 선정 소상공인 용역(시공) 추진

- 용역(시공) 시행기간: 2025. 3. 27.(목)~9. 30.(화)
- 용역(시공)을 완료한 소상공인은 용역(시공)업체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도시재단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
 - ※ 선정 소상공인은 부가세를 포함한 용역비 전액을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 가능
- ※ 계좌이체 규정 준수(계좌이체 필수, 카드결제 불가)

□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

- 선정 소상공인 대상 교육일('25. 3. 27.) 이전 용역(시공)을 시행 한 경우 지원불가
- 사업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지원금 지급 신청서(지출증빙 자료 포함) 및 완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 제출 필수



○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기한 내 (2025. 9. 30.)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

□ 제출서류 목록(사업 완료 후 준비하여 제출)

		항 목	서식 번호	비고
	1	체크리스트 ※ 반드시 신청자(선정업체 대표) 본인 서명 또는 날인	제12호	
	2	지원금 지급 신청서 ※ 반드시 신청자(선정업체 대표) 본인 서명 또는 날인	제13호	
	3	완료보고서 ※ 용역(시공·제작)내용, 용역(시공·제작)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	제14호	
	4	전자세금계산서 ※ 국세청 신고 통보용(용역업체가 선정업체에게 발행)	-	
필 수	5	계작이체 입금 확인증 또는 거래내역확인증 ※ 입금자 성명/수령자 성명/계좌번호/날짜 확인 가능 서류 ※ 신용카드 결제 불가	-	
	6	용역(시공)업체 거래명세서 ※용역(시공) 한 업체당 각 1부	-	
	7	용역(시공)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※ 용역(시공·제작)과 관련 없는 업종·업태의 업체에서 사업 추진시 지원 불가	-	
	8	신청자 지원금 수령용 본인 통장 사본 ※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통장 사본	-	
	9	만족도 조사	제15호	



VI 유의사항

■ 선정 소상공인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공고기간 내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전체예산 범위 내 선정된 신청자에게만 지원하며, 선정된 소상공인은 경영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공·제작 완료 및 결과 · 정산보고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선정 소상공인 사업과 관련된 직접시공(제작),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(제작)하는 경우 지원 불가(선정취소)

■ 용역(시공)업체 유의사항

- 시공(제작)업체는 반드시 수원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
- 시공업체의 업체당 시공참여는 <u>최대 5개사 이내</u>로 참여 ※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
- 시공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업체, 대표자 본인이 금융거래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
- 용역(시공) 추진시 관련된 업태와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에 포함된 용역(시공)업체를 선정해야 함
-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(부모, 조부모, 배우자, 형제자매 등) 에 해당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
-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,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해야 지원 가능하고, 옥외광고물 표시신고(허가)필증을 제출해야 함
 - ※ 간판 시공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해당 시·군 관할 관청에 옥외광고 물표시 신고(허가)를 득해야 함

■ 견적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

○ 견적서는 신청분야(간판교체지원, 점포 내부인테리어, 제품 포장패키지 제작)에 대한 견적서(서식 제7호)를 제출해야 하며, 견적서는 2개



-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(비교견적 필수)
- 간판 시공시에는 간판 시공업체의 옥외광고업등록증, 관할 시에 신고한 옥외광고물 신고증(또는 신고비대상확인서)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전기공사시에는 용역(시공)업체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■ 용역(시공)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

- 선정 소상공인은 용역(시공)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시공업체에 선지급 후 도시재단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, 완료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
- 시공(제작)비용 지출 시 현금 대면 거래, 현금 입금, 카드 결제 영수증 지출 증빙은 인정 불가함
- 용역(시공) 비용 지출증빙은 은행 계좌간 입금확인증, 온라인 이체확인증, 입금통장 거래 내역으로 가능하며, 입금자, 수령자, 계좌번호가 명확해야 함(입금자는 반드시 선정 소상공인 대표가시공업체 대표에게 입금을 원칙으로 함)
- 선정 소상공인은 비용지출 시 용역(시공)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(수기 세금계산서 불인정)
- 자부담금(공급가액10%), 부가가치세, 지원한도 초과금액, 송금수수료 등은 선정 소상공인 부담임

■ 지원금 지급신청 시 유의사항

- 선정 소상공인은 지원사업을 성실히 완료하고 모든 비용을 선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
- 선정 소상공인과 용역(시공)업체는 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, 자부담 면제 등의 위법,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
- 지원금 지급신청은 최초 지원 결정금액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, 지원 신청금, 자부담금(10%이상), 부가가치세 금액을 신청서에 구분



표시하고 지출한 시공(제작)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

- 지원금 지급은 제출한 완료보고서, 사진, 결과물, 증빙자료 등 검토 후,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급함
- 도시재단은 필요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,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(확인)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

■ 사업변경, 사업포기 및 시공변경 시 유의사항

- 지원분야(간판교체지원, 점포 내부인테리어, 제품 포장패키지 제작) 변경은 불가하며, 세부 지원내용에서만 변경 가능
- 지원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 신청서 【서식 제8호】를 제출하여야 함(차순위 예비 순번자에게 기회 제공)
-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, 용역(시공)업체 변경시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【서식 제9호】를 재단으로 요청 및 제출, 변경 승인 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함
 - * 사업변경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센터 담당자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하며,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
- 선정 내용 변경 시
 - 제작비용이 상향되는 경우, 지원금은 변동되지 않음
 -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, 지원금은 감소된 비용(공급가액의 90%) 으로 감액 변경 지원됨

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
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 소상공인은 수원도시재단 보조금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 부당행위 수반 시)
 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


•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<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>

• 자부담금(부가세 포함)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,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, 제 3자 부당개입, 선정 소상공인 휴·폐업, 사업장 양도, 부실시공, 관련서류 위·변 조, 선정통지일 이전 과제 시행, 당기관 및 타기관 유사 지원사업 과제 중복 지원,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



[별표1]

『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』 **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**

업 종	품목코드	해 당 업 종				
-ij -z VJ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				
제조업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				
	46102中	주류, 담배 중개업				
	46109中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				
	46209中	잎담배 도매업				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				
도매 및 소매업	46416中	모피제품 도매업(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)				
	46463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				
	4764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				
	47859中	성인용품 판매점				
	47911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, 성인용품도소매업				
음식점 및 주점업	56211~2	일반(무도)유흥 주점업				
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58122中	경마, 경륜,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				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			
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	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					
금융 및 보험업 64~66		금융 및 보험업, 다만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 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제외				
부동산업	68	부동산업,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 (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: 부동산관리업,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)				
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	6939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				
전문서비스업	71531中	기획부동산업*				
	75330中	흥신소				
사업지원 서비스업	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				
	75999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경품용 상품권 판매업				
	91113	경주장 운영업				
	91121	골프장 운영업				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22中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성인PC방,전화방				
	91249	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				
	91291	무도장 운영업				
	9612中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				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992	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				
	96999中	휴게텔,키스방,대화방				

^{* (}운영형태)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(330㎡, 660㎡등)로 분할한 후,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(전화권유 판매)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(시세의 3~5배)에 매도하는 업체



[별표2]

『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**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**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평균매출액 등
1. 식료품 제조업	C10	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120억원 이하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
19. 광업	В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80억원 이하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00구면 이야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
30. 운수 및 창고업	Н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
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평균매출액 등
32. 도매 및 소매업	G	[이어이 시구]
33. 정보통신업	J	5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30억원 이하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Ι	
41. 교육 서비스업	P	10억원 이하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[비고]

- 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